

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를 해나가는 자료의 하나로서, 직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은 우선 점검일람표라 할 수 있다. 손쉽게 이용하여 직장내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검표는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. 여기에서는 각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, 작업관리자들이 작업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크게

1. 작업형태상 중요사항을 뽑아 요약한 직장별 체크리스트
2. 작업방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별 체크리스트
3. 전문의사 수진을 위한 산업보건 체크리스트

로 나누어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.

직장별 체크리스트 4

직장별 체크리스트는 기계별, 작업별, 동작별 등 얼마든지 세분화 할 수가 있다.

그런 것들은 정밀하게 점검할 수는 있겠지만,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것은 직장단위로 집약된 체크리스트라 할 수 있다. 직장을 점검할 경우, 보다 정밀한 점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. 점검표는 기계별, 작업별로 나눌 수 있으며, 더 세분화하여 작업별 중에서도 동작별이나 공정별 등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.

반면에 한가지나 두가지의 점검표로서 효율적으로 직장을 점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직장단위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가 편리하다. 직장별 점검표는 점검사항을 적당한 분량으로 요약해서 직장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사항은 중요성이 높은 것부터 엄선된 것이어야 한다.



◆ 화학공장 체크리스트 ◆

구 분	체 크 포 인 트	양 부	개선점
화 학 설 비 · 특 수 화 학 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학설비나 배관의 각부분 접합부가 밀착되어 있는가 · 밸브, 콕크 또는이러한 것들을 조작할 스위치 등은 개폐방향이 표시되어 있고, 색이나 형태구분 등을 하였는가 · 공급할 원재료의 종류나 필요사항이 표시되어 있는가 ·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였는가 ·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였는가 · 특수화학설비의 이상상태에 발생에 따른 폭발,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였는가 · 동력원 이상에 의한 폭발,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고 있는가 · 폭발,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,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· 개조, 수리,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작업방법, 순서를 정하고 지휘자, 감시인을 배치하고 있는가 · 개조, 수리,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작업장소나 주변의 위험물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있는가 		
특 정 화 학 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화물 제3류 물질 등의 접촉부분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고 내장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· 접합부는 누출방지를 위하여 가스켓을 사용하고,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· 수동식 밸브, 콕크는 개폐방향이 표시되어 있는가 · 밸브, 콕크 등을 조작하는 스위치, 누름단추는 색구분, 형상구분 등이 되어 있는가 · 공급할 원재료의 종류, 공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가 ·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· 특화물 제3류 물질 등을 함께 100ℓ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누출경보설비를 설치하였는가 · 관리특정화학설비는 긴급 차단장치 등 이상화학반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였는가 · 특정화학설비 등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예비동력원을 구비하고 있는가 · 특정화학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작업규정을 정하고 실행토록 하고 있는가 · 특정화학설비가 있는 작업장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		

구분	체 크 포 인 트	양부	개선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화물 제3류 물질 등의 누출에 대비하여 구호조직의 확립, 관계자의 훈련 등에 힘쓰고 있는가 · 특정화학물질 등 작업주입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		
압 력 용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종 압력용기 취급 작업주입자가 선임되어 있는가 · 제1종 압력용기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하여 압력을 상승시키지 않는가 · 제1종 압력용기의 안전판 기능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· 제1종 압력용기의 사용방법, 내용물의 종류를 바꿨을 경우 등에는 작업방법을 주지시키고 있는가 · 제1종 압력용기의 내부온도, 압력 등을 수시점검하고 있는가 · 제1종 압력용기에 관련되는 설비의 운전상태를 기록하고, 교대시에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있는가 · 제1종 압력용기는 매월 정기 자가점검을 하고 있는가 · 제2종 압력용기의 안전판을 최고사용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있는가 · 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계는 내부가 동결 또는 80℃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· 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계 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을 나타내는 위치에 보기 쉽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가 · 제2종 압력용기의 매년 정기 자가검사를 하고 있는가 		
유 해 물 관 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해물 취급 등을 하는 유해작업장에서는 대체물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· 가스, 증기, 분진을 발산하는 실내작업장에서 발산원의 밀폐설비, 국소배기장치,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· 유해물을 함유한 배기를 배출하는 설비에는 효과적인 방식에 의한 배기처리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· 유해물을 함유한 배액은 효과적인 방식에 의해 처리된 후 배출되고 있는가 · 유해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관계자외에 출입을 금지하고, 그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· 유해물 등을 적재하는 장소에 표시를 하였는가 · 고무 가황을 하는 실내작업장,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반개월마다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는가 · 유해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은 보호의, 보호안경, 호흡용보호구 등의 보호구가 구비되어 있는가 · 보호구는 취급근로자수와 동수이상 구비하고 상시 성능 및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· 유해물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, 주위벽은 세정하고 있는가 · 유해물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,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도장하고,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였는가 		